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영화발전기금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촬영 유치지원 및 국제 공동 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거친 방송광고, 그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 등이 동일한 내용으로 연출·제작된 방송광고영화를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보호나 제재조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 음악영상물등에 관한 등급분류 규정을 삭제하고, 음악영상물 자체 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업무를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 규정을 정비함(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및 제79조).

II. 검토의견

1. 방송광고 시간 제한 관련(안 제29조의2제1항제1호)

안 제29조의2제1항제1호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장면 등이 동일한 내용으로 연출·제작된 방송광고영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

그런데, 그 중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광고 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은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주류), 「청소년 보호법」(청소년유해매체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등임.

해당 법령에서는 “업종”의 종류보다는 특정한 품목(주류)¹⁾, 품목 중 사전에 정의된 특징(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있거나 별도의 심의기구가 품목 중 범주를 정하도록 하는(청소년 유해매체) 경우 등으로 구분되는바, 업종으로 구분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그 구분기준은 향후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확장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²⁾³⁾

-
- 1) 주류 관련 “업종”은 국제청 업종분류코드상 주류의 제조면허, 판매면허(도매, 소매, 중개 등) 등으로 구분됨.
- 2)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방송광고 시간의 제한) ① 주류광고 또는 대부업광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주류
 - 가. 텔레비전 방송광고 : 07:00 - 22:00
 - 나. 라디오 방송광고 : 17:00 - 익일 08:00. 다만, 08:00 - 17:00의 시간대라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2. 대부업
 - 가. 평일 : 07:00 - 09:00, 13:00 - 22:00
 - 나. 토요일·공휴일 : 07:00 - 22:00
- ② 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 음반, 비디오, 간행물 등을 포함한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어린이 의약품의 방송광고 및 유료전화정보서비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광고시간의 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으로 한정한다)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광고에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광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방송광고의 허용 시간을 제한받는 업종”을 “제한받는 대상”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9조의2(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특례) ① 영화업자는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특례) ①----- ----- ----- ----- -----.
1.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 <u>업종</u> 에 대한 방송광고영화	1. ----- ----- ----- <u>대상</u> ----- -----
2. 「(생략)」	2. (개정안과 같음)

2. 부칙 시행일 관련(안 부칙 제1조)

개정안 중 제50조제1항, 제50조의8제1항·제3항, 제72조 및 제73조제2항은 음악영상물등에 관한 등급분류 규정을 삭제하고, 음악영상물 자체 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업무를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당 규정은 우리위원회에 2026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동 개정안과 함께 회부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음악영상물에 대하여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조문정비에 해당함.

그런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하위법령 정비 등 제도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하는 수정안이 마련되었는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연계되는 각 조문의 시행일도 “공포 후 1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제50조제1항, 제50조의8제1항·제3항, 제72조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제50조의8제1항·제3항, 제72조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그 밖에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세 진)